

# 동탄2신도시 A62블록 호반써밋 동탄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건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사항]

- 「동탄2신도시 A62블록 호반써밋 동탄」아파트는 '22.01 분양 완료 이후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며,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hobansummit-dt.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정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청약 시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시까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가 금지**되며, 한편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 단, 향후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7.**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03.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7.)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 (계약취소주택) | O              | O             | X      | X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 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가 금지되며, 한편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 일 정 | 10월 04일(수)   | 10월 05일(목)   | 10월 11일(수)   | 10월 12일(목)~13(금)              | 10월 18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공고문 8~12페이지 참조                |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

-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견본주택 접수 불가)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 - 23141 (2023.09.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6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9개동 총 744세대 및 중 계약취소주택 4세대[특별공급3세대 (신혼부부 1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2024.01

■ 공급대상 (단위: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br>공급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일반공급<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노부모<br>부양 | 신혼부부 | 계 |             |
| 민영<br>주택 | 2023930037 | 01 | 074.9655        | 74   | 74.9655    | 22.7512    | 97.7167  | 52.7405                | 150.4572 | 67.1521     | 1          | -         | 1    | 1 | -           |
|          |            | 02 | 084.8404A       | 84A  | 84.8404    | 25.6642    | 110.5046 | 59.6877                | 170.2588 | 75.9977     | 3          | 2         | -    | 2 | 1           |
|          | 합 계        |    |                 |      |            |            |          |                        |          |             | 4          | 2         | 1    | 3 | 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 동    | 호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분양대금        | 계약시        | 2024.01.12  |
| 074.9655  | 4103 | 0602 | 143,332,000 | 253,168,000 | 396,500,000 | 39,650,000 | 356,850,000 |
| 084.8404A | 4101 | 1305 | 162,212,000 | 286,188,000 | 448,400,000 | 44,840,000 | 403,560,000 |
|           | 4107 | 1503 | 162,212,000 | 286,188,000 | 448,400,000 | 44,840,000 | 403,560,000 |
|           | 4108 | 0503 | 162,212,000 | 286,188,000 | 448,400,000 | 44,840,000 | 403,56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03.)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일정 공정 후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 품목 현황

| 주택형       | 동    | 호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4.01.12 |               |
| 074.9655  | 4103 | 0602 | 3,687,000 | 368,000  | 3,319,000  | - 침실3 불박이장 설치 |
| 084.8404A | 4101 | 1305 | 3,914,000 | 391,000  | 3,523,000  | - 침실3 불박이장 설치 |
|           | 4107 | 1503 | 3,914,000 | 391,000  | 3,523,000  | - 침실3 불박이장 설치 |
|           | 4108 | 0503 | 3,914,000 | 391,000  | 3,523,000  | - 침실3 불박이장 설치 |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 품목 현황

| 주택형      | 동    | 호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4-01-12 |  |
| 74.9655  | 4103 | 0602 | 11,540,000 | 1,154,000 | 10,386,000 |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2-2안(거실+침실1+침실3)<br>-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br>- 주방팬트리(날개벽+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br>- 침실1 드레스룸(3연동 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br>- 침실1 파우더장(좌식 화장대)<br>- 거실아트월 천연대리석+간접조명<br>- 3구 인덕션(LG전자)             |
| 084.9481 | 4101 | 1305 | 23,120,000 | 2,312,000 | 20,808,000 |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1안(거실+주방+침실1)<br>- 현관창고(현관날개벽+도어+시스템 선반)<br>- 주방팬트리(날개벽+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br>- 주방대형팬트리(날개벽+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br>- 침실1 드레스룸(3연동 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br>- 침실1 파우더장(좌식 화장대)<br>- 3구 인덕션(일렉트로룩스) |
|          | 4107 | 1503 | 7,530,000  | 753,000   | 6,777,000  |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3안(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          | 4108 | 0503 | 12,130,000 | 1,213,000 | 10,917,000 | - 시스템에어컨 일반형3안(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br>-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br>- 현관창고(현관날개벽+도어+시스템 선반)<br>- 주방팬트리(날개벽+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br>- 3구 인덕션(LG전자)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br>납부계좌 | KB국민은행 | 393301-04-077204 | (주)스카이라빙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3.09.27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이하 | ~9,113,233원                            | ~10,670,878원 | ~11,256,689원 | ~12,182,295원 | ~13,107,900원 | ~14,033,506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3.10.04(수)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br>-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br>- 스마트폰 앱 |
| 일반공급 |             | 2023.10.05(목) 09:00~17:30 |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br>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 「청약신청」 ⇒ 「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b>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b> 각 유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b>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b>,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단,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b>(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기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동<br>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본인 및<br>피부양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br>•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자금조달계획서  | 본인          | • 접수장소비치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고하는 경우<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li>•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li> <li>-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li> </ul>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br>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존속은 3년, 비속은 1년)   |
| 제3자<br>대리인<br>신청서<br>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장       | 대리인         |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br>② 재직증명서<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br>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① 해당직장              |

|      |                       |  |                                   |
|------|-----------------------|--|-----------------------------------|
|      |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br>[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br>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세무서<br>②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br>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③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br>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① 건본주택 비치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공통<br>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본인 및<br>피부양<br>직계존비속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br>•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br>-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자금조달계획서 | 본인                  | • 접수장소비치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고하는 경우<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제3자<br>대리인 신청시<br>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장      | 대리인                 |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자      | ○ |         | 해당주택에<br>대한<br>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10.11.(수)</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23.10.18. (수) (10:00~16:00)</li> <li>• 장소</li> <li>-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18 호반파크2관 1층</li> </ul> |
|      | 일반공급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가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3.10.11 (수) ~ 2023.10.20 (금)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3.10.11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VI 유의사항

| 구 분        | 내 용   |
|------------|---|
| 단지<br>외부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li> <li>•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li> </ul> |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동측 : 폭 20.5M, 남측 : 폭 35M, 남동측 : 폭 7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의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구 남측에 물류센터, 상가 및 서측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여 전면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 및 남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피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 약 200m 지점 유치원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서측 약 600m 거리에 23번 국지도(왕복 4차선)가 위치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본 단지 서측 약 200m 지점 중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약 300m 지점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물류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 관련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 약 500m 지점 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남서측에는 공공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차로 인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서측으로 왕복 6차선 도로(L=35m)와 약 0.5km 직선거리에 국지도 23호선 신리.C가 위치하고 있고, 이로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 약 200m 지점 왕배산 3호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약 4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예정))이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성동탄2신도시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경부고속도로, 영덕~오산간 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간 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공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포함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 등)이 존치예정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탄JC 인근(폐1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지역에 계획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시설),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청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음을 수인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지구 내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남측에 변전소, 북측에 케이블헤드, 오수중계펌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 전기공급 설비 (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사업주체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화성동탄(2)신도시 서남측에 인접하여 동탄 일반산업단지(동탄일반산단, 동탄2일반산단, 동탄3일반산단, 장지도시첨단산단(가칭))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초등학생은 화성신동초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교(동탄목동중, 서연중, 청림중, 방교중, 화성세정중)에 배치 할 계획임.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p>설계 및<br/>단지내부여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견본주택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측벽 및 옥상, 옥탑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li> <li>•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 보관소는 각 동 지하층 출입구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필로티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단지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li> <li>• 당 현장은 남북 고저차가 약 25m 이상으로 단지내부 단차, 옹벽,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 출입구 진입레벨, 지하주차장 레벨등이 각 동별로 상이함.</li> <li>• 단지 북측(4108/4109동 북측) 레벨차에 따라 대지경계측 높이 10m내외의 보강도 옹벽으로 시공되며,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됨.</li> <li>•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건축심의등 인허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측(공동주택 출입구), 동남쪽(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출입구 공용) 2개소 설치되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으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남측 보행자 출입구 및 공공공지는 택지개발 사업자(LH)측 시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4107동 정면 및 4104동 정면/4102동 측면에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설치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4102동 및 4103동 인접 지하에 근린생활 시설이 설치되며, 단지내 레벨차에 따라 전면 도로에 노출된 형태로 외부인 이용 및 상가 전면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단지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4108동/4107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4109/4106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공간, 4105/4101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4108동/4107동, 4105/4101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설치로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li> </ul> |

- 4106동/4105동 인근에 어린이집/경로당 및 유아놀이터 설치로,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차로 3개 단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차부위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는 음영, 야간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출입구는 단지내 레벨차에 따라 4101/4102/4105/4106동은 가장 높은 레벨, 4103/4104/4109동은 중간레벨, 4107/4108동은 가장 낮은 레벨에 위치함.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은 지하3층 → 지하2층 → 지하1층 순으로 진입되며, 부출입구 차량 출입은 지하2층으로 진입되며, 각 층별 내부 램프를 통해 이동 가능함.
- 각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4101/4102동은 지하1층, 4105/4106동은 지하1~2층, 4103/4104/4109동은 지하2층, 4107/4108동은 지하3층에 위치함.
- 지하주차장 및 주차램프 통행로 유효높이는 2.7m,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4107/4108동 하부에 다목적 체육관/골프연습장/휘트니스 등 주민 운동시설, 저수조/기계실/발전기실/전기실등이 설치되어 음악/골프 타격음 등 진동, 소음등의 영향이 있으며 지상에 DA등이 설치되며, 하부 실외기실 설치로 소음, 진동, 열기등이 발생됨.
- 다목적 체육관/골프연습장휘트니스 등 실내 운동 시설은 단지 북측 지하4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계단 및 동측 도로변에서 진입이 가능하여, 4101/402동 등 멀리 떨어진 동에서의 이용이 불편 할 수 있음.
- 4103/4104동 후면 인접 지하에 관리사무소, 실내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됨.
- 각동 필로티 내부 및 측면에 지하층 환풍 및 소방 환풍용 DA가 설치되어 있으며, 4101/4102/4103/4104/4105/4107동 안방 실외기실 측면에 DA 그릴이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에 설치(4107동 후면, 4108동 전면)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됨.
- 지상1~2층이 필로티일 경우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 하도록 계획함.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지상에 지하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및 제연용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 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103동 옥탑층에 TV 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 기준)/ 무선통신 안테나,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설비(4102동, 4104동, 4107동 옥탑 및 지붕층(3개소)), 4105동 지하1층 환풍(1개소), 4104동, 4105동 사이 지하2층 환풍(1개소), 4106동, 4109동 사이 지하2층 환풍(1개소), 4107동 주변 지하3층 환풍(1개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104동, 4105동, 4107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모델하우스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각 동의 배면(또는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4106동 1호, 4108동 1호, 4109동 4호는 전면측에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 시야 간섭 및 악취 등이 전면 침실/거실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음.
-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팸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 공공공지, 공원, 인접대지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택지개발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            |  |
|------------|--|
|            | <p>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소방용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조경 식재가 불가함</li> <li>•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li> <li>•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도어 스토퍼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응축수 발생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li> <li>•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li> <li>-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및 바닥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li> <li>-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li> <li>-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li> <li>-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li> <li>-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li> <li>-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li> </ul> </li> <li>•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li> </ul>   |

-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는 분양가 미포함이며 입주시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는 1~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필로티 상부 1개층)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하며,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상 주의를 요함.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고,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및 부대시설 상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 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함.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배수 이층관은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101/4102동 3~5호 조합 승강기 홀은 채광/환기창이 미설치되어 계단실 창호를 통한 간접 채광/환기(5개층마다 1개소 환기창 설치)만 가능함.
- 4101/4102동 3호세대 84A형 침실3은 인접세대 주방에 면하고 있어 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4101/4102동 3~5호 3호 조합 승강기는 동 중앙에 설치되어 사용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84A형 3호 세대 현관 및 공용욕실에 면하여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화장대 콘센트 전원은 전동회로에서 분기되어 일괄소동 스위치 작동시 전원이 차단됨

## VII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화성 동탄2지구 A-62BL 호반 베르디움</p> <p>2. 신청자: 김철석</p> <p>3.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로 68</p> <p>4. 성능등급</p> <p>가. 소음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생활소음 차단성능</td><td>★★★★</td></tr> <tr><td>2. 동행소음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외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연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건축의 생태학적 기여</td><td>해당없음</td></tr> <tr><td>2.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td><td>해당없음</td></tr> <tr><td>3. 풍수사실상토질 최소화</td><td>해당없음</td></tr> <tr><td>4. 필층외 건물배기 대체의 타당성</td><td>해당없음</td></tr> <tr><td>5. 에너지 절감</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td><td>★★★★</td></tr> <tr><td>7. 인-건물에너지 이용</td><td>해당없음</td></tr> <tr><td>8. 외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구조물 보호를 위한 옥상방수의 사용 금지</td><td>해당없음</td></tr> <tr><td>10. 환경성상인 재료(EPA)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재료의 사용</td><td>★★★★</td></tr> <tr><td>12. 저탄소원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인증 획득 비용</td><td>★★★★</td></tr> <tr><td>15. 재활용기능지원을 위한 포장사실 설치</td><td>★★★★</td></tr> <tr><td>16. 포장사실</td><td>해당없음</td></tr> <tr><td>17. 미용 및 유희지용이 이용</td><td>해당없음</td></tr> <tr><td>18. 물 사용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08월 24일<b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생활소음 차단성능                       | ★★★★ | 2. 동행소음 차단성능 | ★★★★ | 3. 세대 외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 실내-외 소음도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내구성 | ★★★★ | 2. 가연성 | ★★★★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기존 건축의 생태학적 기여 | 해당없음 | 2.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 해당없음 | 3. 풍수사실상토질 최소화 | 해당없음 | 4. 필층외 건물배기 대체의 타당성 | 해당없음 | 5. 에너지 절감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 | 7. 인-건물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8. 외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 ★★★★ | 9. 구조물 보호를 위한 옥상방수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10. 환경성상인 재료(EPA)의 사용 | ★★★★ | 11. 저탄소 재료의 사용 | ★★★★ | 12. 저탄소원 자재의 사용 | ★★★★ | 13.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 | ★★★★ | 14. 녹색건축인증 획득 비용 | ★★★★ | 15. 재활용기능지원을 위한 포장사실 설치 | ★★★★ | 16. 포장사실 | 해당없음 | 17. 미용 및 유희지용이 이용 | 해당없음 | 18. 물 사용 기기 사용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0-2640호</p> <p>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인증기간: 2020.8.24. ~ 사용유한일</p> <p>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로 69</p> <p>층수: 지하 4층, 지상 20층 / 744세대</p> <p>연면적: 125,983.0022㎡</p> <p>건축물의 주요 용도: 공동주택</p> <p>발급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종합등급 ★☆☆</p> <p>2020년 8월 24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br/>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건축물 개요</p> <p>건축물명: 화성 동탄2지구 A-62BL호반 베르디움</p> <p>승인번호: 20202731</p> <p>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로 69</p> <p>층수: 지하 4층 지상 20층 (지하층)</p> <p>연면적: 128067.1806㎡</p> <p>건축물의 주요 용도: 공동주택</p> <p>설계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인증번호: 1-1801</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p>에너지효율등급: 48</p> <p>에너지소비효율 (kWh/㎡·년): 110.2</p> <p>CO<sub>2</sub> 배출량 (kg/㎡·년): 64</p> <p>에너지효율등급 상세평가</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효율 (kWh/㎡·년)</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효율 (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r> <tr><td>연방</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4.1</td><td>57.9</td><td>44.3</td></tr> <tr><td>냉방</td><td>30.7</td><td>38.1</td><td>28.2</td></tr> <tr><td>조명</td><td>7.1</td><td>6.5</td><td>17.9</td></tr> <tr><td>환기</td><td></td><td>3.8</td><td>10.6</td></tr> <tr><td>합계</td><td>91.8</td><td>106.3</td><td>21.1</td></tr> </table>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연방 | 0.0 | 0.0 | 0.0 | 난방 | 44.1 | 57.9 | 44.3 | 냉방 | 30.7 | 38.1 | 28.2 | 조명 | 7.1 | 6.5 | 17.9 | 환기 |  | 3.8 | 10.6 | 합계 | 91.8 | 106.3 | 21.1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활소음 차단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동행소음 차단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세대 외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 실내-외 소음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존 건축의 생태학적 기여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풍수사실상토질 최소화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필층외 건물배기 대체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에너지 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인-건물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외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구조물 보호를 위한 옥상방수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환경성상인 재료(EPA)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저탄소 재료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저탄소원 자재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녹색건축인증 획득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재활용기능지원을 위한 포장사실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포장사실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미용 및 유희지용이 이용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물 사용 기기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방   | 0.0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방   | 44.1                    | 57.9                       | 4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방   | 30.7                    | 38.1                       | 2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명   | 7.1                     | 6.5                        | 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기   |                         | 3.8                        |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91.8                    | 106.3                      | 2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p>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p> <p>단열조치 준수(가목)</p> <p>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p> <p>방습층 설치(다목)</p>     | <p>적용</p> <p>적용</p> <p>적용</p> |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p>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p>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p> |
| <p>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p> <p>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p> <p>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p> | <p>적용</p> <p>적용</p>           |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p> <p>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p>   |

|                          |                     |     |  |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지역난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 사 명 | (주)중합건축사무소 동일건축 | (주)신담엔지니어링  | (주)이림기술단    | (주)금라기술단    |
| 감리금액  | 1,946,084,800   | 471,983,130 | 204,820,000 | 138,6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금액          | 구분        |         | 금액        | 구분         |        | 금액         |          |           |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99,937,448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35,770,926 | 공사비    |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868,723   |
|     | 기간이자   | 6,033,829   |           |         | 용접공사      | -          |        |            | 난방설비공사   | 1,788,546 |
|     | 필요적경비  | 5,213,247   |           |         | 조적공사      | 1,277,533  |        |            | 가스설비공사   | 485,463   |
|     | 그밖의비용  | 7,983,251   |           |         | 미장공사      | 1,788,546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204,405   |
|     | 계      | 119,167,775 |           |         | 단열공사      | 638,767    |        |            | 특수설비공사   |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1,941,850 | 방수·방습공사 | 766,520   | 그밖의공종      | 공조설비공사 | 638,767    |          |           |
|     |        | 흙막이공사       | -         | 목공사     | 1,788,546 |            | 전기설비공사 | 11,970,485 |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가구공사    | 3,577,093 |            | 정보통신공사 | 7,422,467  |          |           |
|     |        | 옹벽공사        | 511,013   | 금속공사    | 2,044,053 |            | 소방설비공사 | 8,508,370  |          |           |



|    |            |           |      |          |           |     |          |             |             |
|----|------------|-----------|------|----------|-----------|-----|----------|-------------|-------------|
| 건축 | 석축공사       | -         | 기계설비 | 지붕및흡통공사  | 229,956   | 간접비 | 승강기공사    | 1,533,040   |             |
|    | 우수·오수공사    | 766,520   |      | 창호공사     | 3,704,846 |     | 그밖의공사비   | 일반관리비       | 6,387,666   |
|    | 공동구공사      | -         |      | 유리공사     | 894,273   |     |          | 이윤          | 8,303,965   |
|    |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 -         |      | 타일공사     | 1,788,546 |     |          | 계           | 126,475,774 |
|    | 도로포장공사     | 766,520   |      | 돌공사      | 2,555,066 |     | 설계비      | 2,013,545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도장공사     | 1,277,533 |     | 감리비      | 4,266,501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도배공사     | 638,767   |     | 일반분양시설경비 | 11,492,000  |             |
|    | 조경공사       | 2,810,573 |      | 수장공사     | 1,916,300 |     | 분담금및부담비  | 3,892,000   |             |
|    | 부대시설공사     | 51,101    |      | 주방용구공사   | 983,700   |     | 보상비      | -           |             |
|    | 공동가설공사     | 3,449,339 |      | 그밖의건축공사  | 1,277,533 |     | 기타사업비성경비 | 36,062,986  |             |
|    | 가시설물공사     | 511,013   |      | 급수설비공사   | 1,060,352 |     | 계        | 57,727,032  |             |
|    | 지정및기초공사    | 1,877,974 |      | 급탕설비공사   | 1,060,352 |     | 그밖의비용    | 21,809,478  |             |
|    | 철골공사       |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638,766   |     | 합계       | 325,180,059 |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사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 항목          |               | 금액         | 항목          |                   | 금액             |           |           |
|-------------|---------------|------------|-------------|-------------------|----------------|-----------|-----------|
| 택지비<br>가산항목 | 가산비 계         | 19,230,327 | 건축비<br>가산항목 | 건축비 계             | 21,809,478     |           |           |
|             | 법정 택지이자       | 6,033,829  |             | 법정초과복리시설 건축비      | 1,868,462      |           |           |
|             | 취득세           | 취득세        |             | 3,997,498         | 인텔리전트설비<br>공사비 | 홈네트워크     | 5,186,624 |
|             |               | 교육세(취득세)   |             | 399,750           |                | 정보통신특등급   | 1,777,637 |
|             | 재산세           | 재산세        |             | 419,737           |                | 에어컨냉매배관   | 529,380   |
|             |               | 교육세(재산세)   |             | 83,947            |                | 기계환기설비    | 3,275,295 |
|             |               | 재산세도시지역분   |             | 293,816           | 공동주택성능등급       | 1,448,380 |           |
|             | 등기수수료         | 보수료        |             | 18,152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2,961,535 |           |
|             |               | 인지세        |             | 346               |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 617,260   |           |
|             | 말뚝박기 공사비      | 3,722,172  |             | 후분양 기간이자          | 685,109        |           |           |
|             | 암석지반 공사비      | 861,018    |             | 법령개정에 따른<br>가산비   | 건강친화형주택        | -         |           |
|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2,430,759  |             | 사업승인조건에 따른<br>가산비 | 외관특화공사비        | 1,690,459 |           |
|             | 택지와 관련된 경비    | 969,303    |             |                   | 법정초과조경설치비      | 1,393,568 |           |
|             | -             | -          |             | 분양보증수수료           | 375,769        |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 | (주)스카이리빙 | 200111-0394993 |
| 시공회사 | (주)호반건설  | 204711-0007384 |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obansummit-dt.co.kr/>

■ 문의 : 02-6365-7083